

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안내

개요 :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(공매도 잔고)를 보고 또는 공시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의2(공시) 및 208조의3(보고)]

※ 순보유 잔고란? 종목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에서 차입(신용대주 등)한 수량을 차감한 값(순보유잔고)이 음수(-)인 상태를 의미하며 공매도 잔고와 음(-)의 순보유 잔고는 같은 뜻입니다.

	공매도 잔고 보고	공매도 잔고 공시
근거 조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본시장법 §180조의2 - 동법 시행령 §208조의2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본시장법 §180조의3 - 동법 시행령 §208조의3
의무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장주식*에 대한 공매도 잔고 비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투자자 * ETF, ELW, DR 등은 제외하며 우선주와, 부동산투자회사, 기업인수목적회사,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은 포함합니다 	
의무 발생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①공매도 잔고비율*이 0.01% 이상이면서 잔고 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②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매도 잔고비율 0.5% 이상
$\text{공매도 잔고 비율 (\%)} = (\text{공매도 잔고} \div \text{상장 주식수}) \times 100$		
기한 및 주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무 발생기준에 도달한 날(보고의무 발생일)로부터 2영업일이 되는 날 증권시장(시간외 시장을 포함)의 장 종료 후 지체없이(*17.5.22. 개정) •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로 보고의무 발생기준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 발생 	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식명, 인적사항, 공매도 잔고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식명, 인적사항 등
방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을 하고 잔고내역 등 입력 ①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 받고, (최초 1회) ②보고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 하여 보고 혹은 공시에 필요한 자료입력(화면양식, 또는 엑셀파일) 	

공매 잔고 보고 및 공시방법

· 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.

① 처음에는 고유번호(ID)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 상단의 보고자 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주민등록증(앞면) 사본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이메일(secmarket@fss.or.kr, 신분증 사진촬영 후 전송) 또는 팩스로 전송(02-3145-7577)하면,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고유번호(ID) 및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② 금융감독원 공매도포지션보고(<http://www.fss.or.kr/fss/kr/acro/nsp/report.jsp>)'의 보고서 제출' 메뉴로 들어가셔서 고유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로그인 한 후, 화면양식에 따라 공매도 잔고 내역을 입력하면 됩니다.

※ 공시는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로 자료를 전송하여 이루어 지므로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것으로 공시 의무 이행이 완료됩니다.

· 인터넷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, 금감원 홈페이지의 전산장애시에 한하여 모사전송(FAX 02-3145-7577)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. (모사전송시에는 보고서 파일을 이메일 secmarket@fss.or.kr로 동시에 제출)

※ 문의 :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 ☎ 02) 3145-7573, 7616